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3 장 공정한 경쟁

제 4 장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 6 장 임직원에게 대한 책임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2011.02.23. 제정

2014.09.01. 개정

2018.06.01. 개정

2020.08.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아이티엠반도체는 “윤리와 도덕”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경영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경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아이티엠반도체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협력회사라 함은 당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회사를 포괄하며, 모든 협력회사를 이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3 조(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4 조(고객에 대한 가치의 창조) ①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②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제 5 조(고객에 대한 가치의 제공) ①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②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 6 조(고객의 이익보호) ①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②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④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고객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공정한 경쟁

제 7 조(자유경쟁의 추구) ①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②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8 조(법규의 준수) ①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①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②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 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③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제 10 조(평등한 기회) ①아이티엠반도체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②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 11 조(공정한 거래) ①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을 임직원 각자의 부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⑤협력회사가 아이티엠반도체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⑥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제 12 조(상호 발전의 추구) ①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②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③기업윤리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회사에 대해 교육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 13 조(협력회사 직원존중) ①아이티엠반도체는 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②협력회사 직원이 사업장 근무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점 해결에 노력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14 조(기본윤리) ①임직원은 아이티엠반도체인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아이티엠반도체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자재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제 15 조(사명의 완수) ①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③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내에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한다.

④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⑥동료 및 관계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제 16 조(자기개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17 조(공정한 직무수행) ①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③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삭제

제 18 조(임직원 상호간의 청탁성 선물제공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 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단, 임직원 상호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교환 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제 19 조(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①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②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 20 조(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금지) ①회사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②인터넷이나 복제 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1 조(임직원 상호존중)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②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③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⑤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2.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3. 시각적 행위 : 인격 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 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 22 조(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①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절대 유출 해서는 안 된다.

④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정보에 관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 재무/관리회계 등
2. 영업정보 : 인사관련 정보, 언론 홍보관련 정보, 매출, 이익률,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
상품 및 협력회사 정보
3. 기술정보 : 회의록, 제안서, 소프트웨어, 장비 도면, 기타 기술보고자료 등 회사보유의
각종 기술정보

제 23 조(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 ① 임직원은 임직원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법 위반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행위 및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 간사는 신고 받은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징계, 제도개선 등을 검토 후 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징계의 세부절차는 상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 ④임직원은 보고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해선 안 된다.
- ⑤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⑥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24 조(임직원 존중) ①아이티엠반도체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 ②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③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25 조(인재 육성) ①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 26 조(공정한 대우) ①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③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 27 조(창의성 촉진) ①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②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③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 28 조(경영진에 대한 의견 창구) ①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②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메일과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③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실시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개선조치 및 경영에 반영한다.

제 29 조(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①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②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제 30 조(결사의 자유 보장) ①아이티엠반도체는 직원의 노동조합 또는 독립적인 조합의 설립, 조직, 가입, 탈퇴의 사항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②아이티엠반도체는 직원의 단체교섭 또는 단체 거부권 행사를 보장한다.

③아이티엠반도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 31 조(합리적 사업전개) ①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③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제 32 조(주주 이익의 보호) ①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②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③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 33 조(사회 발전에 기여) ①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회 사업을 통해 칭찬 받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34 조(환경의 보호) ①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②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해석 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경영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경영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